



## D Irvine시, 시의회의 확장 및 시의회 선거구 설정을 위한 헌장 개정

(i) 시의회의 구성원을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려, 새 구성원이 시장 한 명과 시의원 여섯 명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ii) 시의회 결의안 제23-88 번에 묘사된 선거구 경계선에 따라 전체선거에서 선거구별 선거로의 전환을 제공하는 시 헌장 개정안을 채택해야 합니까?

###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YES)	반대(NO)
“찬성(Yes)” 투표는 시의회 확장과 선거구별 선거로의 전환을 승인하는 헌장 개정안에 찬성하는 투표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 과반수의 “찬성(Yes)” 투표를 얻을 경우 승인될 것입니다.	“반대(No)” 투표는 헌장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표로, 시장 한 명과 전체선거로 선출된 시의원 네 명으로 구성된 다섯 명의 시의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찬성과 반대

찬성	반대
Farrah N. Khan 시장  Larry Agran 시의원  Mike Carroll 시의원	Cathy R. Schiff 우려하는 시민

# 투표 법안-D

## 법안 D 전문 Irvine시

### 시의회 확장 및 시의회 선거구 설정을 위한 헌장 개정

#### 헌장 개정 법안 \_\_호

**제1항. 헌장 개정안 본문.** Irvine시 헌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추가 사항은 쌍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는 취소선으로 표시):

#### 제400항. 시장 및 시의회.

2024년 11월 총선거를 시작으로, 시의회, 이하 “의회”는 시장과 이 헌장에서 정한 방식, 시간 및 순서대로 전체 시에서 선출되는 네(4)~여섯(6) 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시에서 선출되는 시장의 임기는 이(2) 년이다. 시장 전체 임기를 두(2) 번 수행하면 다시 시장으로 일할 자격이 없다. 시장이 일(1) 년을 초과하는 부분 임기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전체 임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여기에 기재된 바 이외에, 공직에 대한 적격성, 보상, 공석 및 공석의 충원은 시의원에 대해 본 헌장에 명시된 내용을 시장직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시장은 의회의 의장직을 담당하면서 시의원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의회의 일원이다.

각 시의원의 임기는 사(4) 년이며 제400.1항에 따라 설립된 시의 여섯(6) 개의 단일 시의원 선거구 중 하나(1)에서 선거구별로 선출되어야 한다. 또는, 그리고 연속해서, 두(2) 번째 번의 사 년 임기는 한 번의 시 총선거에서 총원되고 그다음 선거에서는 두(2) 번째 번의 사 년 임기가 총원되며, 그 유효날짜에 기존에 있던 제400항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시의원 임기 순서에 따라야 한다. 사외회 구성원시의원 전체 임기를 두(2) 번 수행한 사람은 사외회 구성원시의로 다시 일할 자격이 없다. 시의원이 이(2) 년을 초과하는 부분 임기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전체 임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시 총선거에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시장직에 선출될 경우 시의원을 사임해야 하는 시의원 한(1) 명 이상이 시장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시의원 시장에 선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의원에 대한 투표자, 공식 선거 자료 및 유권자 정보 팜플렛은 세(3) 명 이하의 사외회 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 최소 두(2) 개의 시의원을 선거로 총원하며;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시의원 시장직에 선출될 경우, 그 시의원의 공석은 같은 시 총선거에서 세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시의원 후보자에 의해 채워진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알라야 한다.

제400항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제401항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또는 제401항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때의 시장과 시의원은, 시의 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및 거주자로 남아있는 이상, 각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에 부합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시의원(들)의 해당 절차가 발생하면, 이 임기를 채우기 위해 전체 선출직으로 해당 시의원(들)의 후임자가 선출된다. 본 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시의원의 의석이 해당 이외의 사유로 임기 종료 전에 공석이 된 경우, 이 의석은 임명 또는 전체 선출직 선거에 의해 총원된다; 다만, 공석이 된 시의원이 시의회 선거구 5 또는 시의회 선거구 6에 거주하는 경우, 제403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시의원이 가능한 한 이 날짜에 거주한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은 2024년 11월에, 그리고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시 총선거에서 선출해야 한다. 2024년 11월에 열리는 시 총선거에서 1, 2, 3, 4로 지정된 시의회 선거구 네(4) 곳에서 시의회 의원이 한(1) 명씩 선출된다. 본 제400항의 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총선거에서 시의회 선거구 1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후임자가 자격에 부합할 때까지 이(2) 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2024년 11월 총선거에서 선출된 나머지 세(3) 명의 시의회 의원은 후임자가 자격에 부합할 때까지 각각 사(4) 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2026년 11월에 열리는 시 총선거에서 1, 5, 6으로 지정된 시의회 선거구 세(3) 곳에서 시의회 의원이 한(1) 명씩 선출되며, 후임자가 자격에 부합할 때까지 각각 사(4) 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선거공무원이 선거 결과를 인준한 이후나 사외회 조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기타 이 날짜 이후에 열리는 의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크나 크녀는 그들은 크나 크녀의 그들의 후임자가 자격에 부합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시장 또는 시의원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크나 크녀 어떤 시의원이 어떤 공직을 총원할지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누구도 시장직과 시의원을 동시에 모두 맡을 수는 없다.

본 절에서 설정된 임기 제한은 전향적으로만 적용된다. 임기 제한은 2014년 11월 4일 이전에 시작된 임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에 사용된 “자격”이라는 용어는 일반법의 조항에 명시된 내용과 선거 후 취임 선서를 하여 크나 크녀의 그들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 제400.1항. 선거구.

2024년 11월 시 총선거를 시작으로 시의원을 선출할 목적으로, 시는 여섯(6) 개의 단일 의원 선거구(각 선거구는 “선거구”로, 종합적으로 “선거구들”로 규정)로 나뉜다. 선거구의 이름과 경계는 시의회 결의안 23-88에 따른다. 매 십 년마다의 연방 인구조사 직후 또는 준거법에 의해 승인되는 때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 시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구의 경계를 설정 및 재배열하는 법률에 따라 선거구의 인구를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시와 합병되거나 통합된 모든 영역은 절차가 완료되기 전 또는 동시에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의해 인접한 선거구 또는 선거구들에 추가되어야 하며, 이 추가는 이에 반하는 헌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통합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발효된다.

#### 제401항. 적격성.

누구라도 크나 크녀가 그들이 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및 거주자가 아니라면 사외회시장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2024년 11월 시 총선거와 관련하여 지명 서류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기타 동등한 출마선언서 접수를 시작으로, 제400.1항에 따라 설정된 선거구의 법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및 해당 선거구 거주자이며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에 의해 지명되고 선출된 자가 아니면 시의원을 맡을 자격이 없다.

모든 시의원 또는 시의원 후보자는 지명 서류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기타 동등한 출마선언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선출되거나 선거 대신에 임명될 경우, 공석의 전체 임기 동안 해당 선거구에서 자격을 갖춘 유권자로 남아야 한다. 본 항, 제400항 또는 제400.1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구의 신설 또는 선거구 경계 또는 위치의 변경도 선출되거나 선거 대신에 임명된 시의원의 공석 임기 전에 시의원의 공석 임기를 폐지 또는 종료시킬 수 없다.

**제2항: 투표지 설명.** 정부 법 제34458.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안된 헌장 개정 법안은 다음의 투표지 설명을 포함한다:

**헌장 개정안(제400항, 제400.1항 및 제401항):** 본 헌장 개정 법안은 제400항을 수정하고, 제400.1항을 추가하며, 제401항을 수정하기 위해 시 헌장을 수정한다. 이 변경 사항은 시의원을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변경한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 년 임기의 전체선출직으로 선출되지만, 나머지 시의원 여섯 명은 선거구별 선거로 전환된다. 여섯 명의 시의원을 위한 초기 선거구는 시의회 결의안 23-88에 정의된 것과 같다. 첫 번째 선거구별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주 전역 총선거에서 제1, 2, 3, 4선거구에 대해 이루어진다. 제2, 3, 4선거구 선출자의 임기는 4년; 제1선거구 선출자의 임기는 이 년이다. 2022년에 선출된 시의원들은 2026년까지 전체선출직 임기를 수행한다. 2026년 주 전역 총선거에서 제1, 5, 6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기반 선거가 이루어진다. 본 개정안은 시의회에 유권자의 승인 없이 급여 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항: 선거구 지도.** 시의회 결의 23-88에 의해 2023년 10월 10일에 시의회가 채택한 선거구 지도는 여기에 별첨 1로 수록되어 있으며, 제400.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Irvine시의



# 투표 법안-D

주민들에 의해 채택 및 승인되었다.

**제4항:** 분리 조항. 본 현장 개정 법안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현장 개정 법안의 조항이나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간주하는 경우, 이는 무효 조항 또는 적용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 현장 개정 법안의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항:** 발효 일자. 본 현장 개정 법안은 법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



## 별첨 1

### Irvine 선거구 지도



전국 인구 통계에 따라 2023년 10월에 제작된 지도

©2021 CALIPER; ©2021 HERE

## 별첨 1

# 투표 법안-D

공정 분석  
Irvine 시  
법안 D

Irvine 시

## 시의회 확장 및 시의회 선거구 설정을 위한 현장 개정

Irvine 시의회는,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시 현장을 개정하여 시의회 의원을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확장하고 선거구별 선거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쳤다. 이 투표 자료에는 현장 개정안 전문의 전체 사본이 인쇄되어 있다.

현재 시 현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년 임기로 선출되는 전체 선출직 시장 한 명과 사 년 임기로 선출되는 전체 선출직 시의원 네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시의회를 확장하여 임기 이 년의 전체 선출직 시장과 임기 사 년의 선거구별 선출직 시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여섯 개의 시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결의안 23-88 ([cityofirvine.org/districtsmap](http://cityofirvine.org/districtsmap)에서도 확인 가능)에 표시된 선거구다. 선거구 경계는 매 연방 인구조사 후 십 년마다 개정된다.

이 법안은 선거구별로 선출된 각 시의원은 후보자 서류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공직을 구하는 해당 선거구에서 자격을 갖춘 유권자여야 하며, 전체 임기 동안 해당 선거구의 거주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각 시의원은 자신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선출된다.

이러한 변경안을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1월 지방 총선거는 이 년 임기의 시장과 제1, 2, 3, 4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의 시의원의 선출을 포함한다(시의회 결의안 23-88 참조). 제1 선거구 선출자의 임기는 이 년이며, 제2, 3, 4선거구 선출자의 임기는 사 년이다. 2026년 11월에 실시되는 지방 총선거에서는 이 년 임기의 시장과 사 년 임기의 제1, 5, 6선거구 시의원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2022년 전체 선출직으로 선출된 시의원이 시장직에 성공적으로 출마하여, 남은 임기를 상실하고, 해당 시의원이 제5선거구 또는 제6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공석이 된 시의회 의석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공석이 된 시의원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별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되어야 한다. 그 외 모든 전체 선출직 의원의 공석은 임명 또는 전체선거를 통해 충원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임기 제한을 수정하지 않으며, 2014년 11월 4일 이후에 시작된 모든 임기에 계속 적용된다.

이 법안은 시의회에 유권자의 승인 없이 시의회나 다른 시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찬성(Yes)” 투표는 시의회 확장과 선거구별 선거로의 전환을 승인하는 현장 개정안에 찬성하는 투표이다. “반대(No)” 투표는 현장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표로, 시장 한 명과 전체선거로 선출된 시의원 네 명으로 구성된 다섯 명의 시의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 법안은 단순 과반수의 “찬성(Yes)” 투표를 받으면 승인된다.

일자: 2023년 10월 24일

서명자/Jeffrey Melching, 시 법무관

위의 진술은 법안 D의 공정 분석입니다. 조례 또는 법안의 사본을 원하시는 경우, 선거 공직자 사무실에 949-724-6205로 전화하시면 사본을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투표 법안-D

## 법안 D에 대한 찬성론

### “시의회 확장 및 시의회 선거구 설정을 위한 현장 개정”

우리는 Irvine의 법안 D에 대한 귀하의 찬성(YES) 투표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법안 D에 대한 유권자 승인은 시의회를 일곱 위원으로 확대하고 선거구 선거로 전환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시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계속해서 시 전체에서 선출됩니다. 채택되면, 법안 D는 2024년 11월 지방선거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D는 미래의 시의회 후보자가 이웃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선거구 선거를 통해 후보자들은 개발자 및 기타 특수 이해관계자의 수십만 달러 자금을 의지하지 않고도 가가호호 풀뿌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71년부터, 약 10,000명의 주민이 Irvine에 거주했을 때, 우리 시는 시 전체에서 선출된 다섯 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Irvine은 현재 30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66제곱마일에 걸쳐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 D는 시의회에 두 개의 의석을 추가하고 여섯 개의 시의회 선거구를 신설하여 - 주택 소유자든 세입자든, 또는 Irvine의 새로운 지역 거주자든 기존 지역 거주자든 간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첨부된 법안 D에는 14번의 공개회의, 다섯 번의 시의회 공청회, 그리고 수백 명 시민의 지도 작성 참여를 포함한 여섯 달 동안의 과정 가운데 독립 인구통계학자가 제작한 선거구 선거 지도(cityofirvine.org/districtsmap)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지도는 지리적으로 작은 여섯 개의 시의회 선거구를 만들며, 각 선거구에는 공통의 관심사와 우려 사항을 가진 약 50,000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합니다. 이 지도는 모든 연방 및 주 투표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없습니다.

Irvine 시의회에서 공정하고, 평등하며, 더 나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D에 찬성(YES) 투표해 주십시오.

서명자/ Farrah N. Khan  
시장

서명자/ Larry Agran  
시의원

서명자/ Mike Carroll  
시의원

## 법안 D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박

법안 D 지지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통합된 대도시가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큰 후퇴”라고 선언한 그들 자신의 시 변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Irvine이 캘리포니아 투표권법(CVRA)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최근 **전체 투표가 CVR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누적 투표, 제한 투표, 또는 순위 선택 투표를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ico 대 Santa Monica 시*, p. 22)고 판결했습니다. 다수 선거구 투표의 유일한 수혜자는 후보자뿐이며, 후보자는 1개의 작은 선거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면 됩니다.

**법안 D는 투표권을 80% 감소시켜** (전체 투표의 6, 7표 대비 2표로) **Irvine의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합니다.**

6명의 시의원이 경쟁 선거구를 지지하는 경우 한 명의 의원이 선거구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의 전체 투표 시스템에서는 “시의원과 시장은 유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개인 및 집단의 견해와 전체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수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다수 선거구제는... 후보자들이... 개발업자 및 기타 특별 이익단체의 자금을 의존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특별 이익단체의 자금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서약이 다른 후보자들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Irvine의 전체 투표와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안 D에 반대(NO) 투표해 주십시오.**

서명자/ Cathy R. Schiff  
우려하는 시민

# 투표 법안-D



## 법안 D에 대한 반대론

### “시의회 확장 및 시의회 선거구 설정을 위한 현장 개정”

캘리포니아 투표권법(CVRA)에 따라, 소수 투표권의 희석을 표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를 만들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은, 우리의 헌법적 선거 과정을 다수 선거구 투표로 대체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분리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Irvine 시 법무관의 말을 빌리자면:

보호 계층의 선거권을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 인종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시에 명령하는 것과,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데, 시에 인종을 의식한 선 구기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우리를 경계하는 인종 파벌로 분열시키고”, “인종이 더 이상 상관없는 정치 체제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통합된 대도시가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를 그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퇴보가 될 것입니다. CVRA가 ‘미국 정치에서 인종주의의 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확대하여 인종적 차이를 고착하도록 해석된다면 “이는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

Irvine에서 선거구별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없고, 도입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a) 소수 대표성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고; (b) **누적 투표, 제한 투표 또는 순위 선택 투표와 같은 다른 개선 대안이 존재하며;** 그리고 (c) 선거구별 투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자체 분리;

-자원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시의원들 간의 협력 상실;

-게리맨더링; 그리고

-매 인구조사 후 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 드는 비용.

선거구는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선거구로 이주하여 배타적인 계도를 만들면서 지역 사회 간의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인종 분리는 백인에 의해 강요되었을 때도 잘못되었고, 흑인에 의해 요구되었을 때도 여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oretta King.)

서명자/ Cathy R. Schiff  
우려하는 시민

## 법안 D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박

법안 D에 대한 반대론은, 그 목적에 대한 오해가 반영된 것입니다. Irvine에서는 소수의 목소리와 유권자들이 결코 묵살되거나 희석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Irvine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철저하게 통합된 도시로, Irvine 시의회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관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 300,000명의 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시 전체에서 선출된 - 겨우 다섯 명의 의원만으로 구성된 Irvine 시의회는 66제곱마일에 걸쳐 있는 수많은 마을과 인근의 다양한 우려 사항과 관심사를 충분히 대변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D의 목적은 Irvine이 성장함에 따라 시 전역에 걸쳐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D는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 법안 D는 시의회 구성원을 현재 다섯 명(시장과 시의원 네 명)에서 일곱 명(시장과 시의원 여섯 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법안 D는 인구가 동일한 여섯 개 지역 시의회 선거구(각각 약 50,000명)를 신설하여 Irvine의 모든 주민이 - 오래된 지역이든 새로운 지역이든 - 자신의 시의회 대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대부분의 도시와 학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선거구 선거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Irvine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Irvine 시의회에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안 D의 찬성(YES)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자/ Farrah N. Khan  
시장

서명자/ Larry Agran  
시의원

서명자/ Mike Carroll  
시의원